

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2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5. 8. 26.

발 의 자 : 정호용의원 외 6명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8991호 : 2005. 8. 5)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회기수당 지급기준 조정(안 제4조)
 - 회기수당 : 1일 70,000원 → 100,000원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
-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
4. 분 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의회 제 호

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1일에 70,000원”을 “일 10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일에 70,000원으로 한다.	제4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100,000원으로 한다.